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만인의총관리소와 국립무형유산원에 만인의총기념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과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시설·기능 확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인력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칠백의총관리소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5 중 총계 “286”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285”를 “28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5”를 “4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5”를 “297”로 하고, 일반직 계 “294”를 “29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0”을 “52”로 한다.

별표 1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1”

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1”를 삭제하며, “임업서기 1”를 삭제하고, “시설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을 각각 “8”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를 신설하며, “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을 각각 “48”로 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을 각각 “48”로 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17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73”을 각각 “7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72”를 “75”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217”을 각각 “21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6”을 “20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u><단서 신설></u>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u>.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286		288	+2	
일	반	•	•	•	•	•	•
직	계	•	•	•	•	•	•
			285		287	+2	
		•	•	•	•	•	•
		•	•	•	•	•	•
행	정	주	사	보	•	•	•
주	사	보	•	•	•	•	•
•	공	업	주	사	보	•	•
•	임	업	주	사	보	•	•
•	시	설	주	사	보	•	•
•	전	산	주	사	보	•	•
보	또	는	학	예	연	구	사
			45		47	+2	
		•	•	•	•	•	•
		•	•	•	•	•	•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95</u>		<u>297</u>	+2	
	.		.		.		
	.		.		.		
일반직 계			<u>294</u>		<u>296</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u>50</u>		<u>52</u>	+2	
	.		.		.		
	.		.		.		

[별표 12]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u> <u>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u> <u>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 · 임업서기 또는</u> <u>시설서기</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보 · 임업서기보</u> <u>또는 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서기</u>	<u>1</u>	<u><삭 제></u>	-1
<u>임업서기</u>	<u>1</u>	<u><삭 제></u>	-1
<u>시설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12의2]

만인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7</u>	<u>8</u>	+1
일반직 계	<u>7</u>	<u>8</u>	+1
•	•	•	
•	•	•	
<u>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u> <u>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3</u>	+3
<u>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47</u>	• <u>48</u>	+1
일반직 계	<u>47</u>	<u>48</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u> <u>담당)</u>	<u><신 설></u>	<u>1</u>	+1

[별표 15의2]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7</u>	• <u>48</u>	+1
일반직 계	<u>47</u>	<u>48</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 담당)</u>	<u><신 설></u>	<u>1</u>	+1

[별표 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3</u>	<u>76</u>	+3
일반직 계	<u>73</u>	<u>76</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2</u>	<u>75</u>	+3

[별표 17의2]

궁능유적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7	218	+1
일반직 계	217	218	+1
3급 또는 4급 이하	206	207	+1